# 폭염·장마철 식중독 예방 '비상'

## 5월까지 17건 343명 의심 신고… 작년 한해 수준 육박
## 7~8월 원인균 번식 급증… "식재료 취급 등 주의해야"

올들어 제주지역 식중독 발생이 급증하면서 요식업소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도 식품 섭취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식품안전나라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제주지역 식중독 발생 신고건수는 모두 17건, 환자 수는 343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3월 103명, 5월에는 132명이나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수준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지난해 제주지역 식중독 발생건수는 18건, 환자 수는 317명이다. 특히 2024년 15건 203명에 비해서는 68%나 급증한 수치다. 지난 5월 제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청주지역 고교생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인게 크게 작용했다. 여기에 이달 초부터 폭염과 장마가 시작되면서 식중독 발생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통계를 보면 7월에 식중독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마철에는 식재료의 보관부터 조리, 섭취까지 전과정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마와 폭염으로 식중독 바이러스인 살모넬라균의 번식이 왕성해지면서 최근 제주시내 모김밥집에서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긴급 역학조사가 실시되기도 했다.

달걀말이, 달걀지단 등 달걀 조리식품과 김밥, 도시락 등 복합조리식품 등이 살모넬라로 인한 주요 원인 식품이다.

제주자치도의 한 관계자는 "여전히 역학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식중독 의심 신고만으로 최종적으로 식중독으로 판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여름철의 경우 식중독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달걀, 알가공품 등 식재료 취급·보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영석기자

'모두의 생리대' 지급기 현장 확인해 보니…

# 의욕적 출발에도 관리실태 '제각각'

## 성평등가족부, 지난 6일부터 공공생리대 시범사업
## 제주시, 시청·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15대 운영 중
## 생리대·안내문 없는 곳도… "재고 관리 매일할 것"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모두의 생리대. 이곳은 '공공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지난 14일 오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공공생리대 지급기 내부가 텅 비어 있었다. 제주시청에는 총 3대의 공공생리대 지급기가 있으나 이곳 화장실만 생리대가 구비돼 있지 않았다.

제주시청 한 화장실에 설치된 공공생리대 지급기. 양유리기자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6일부터 제주시를 포함해 전국 12개 지역의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공공시설에 '모두의 생리대(공공생리대)'를 비치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 2주차를 맞아 제주시내 공공생리대 지급기 15대 중 13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시설에 공공생리대와 지급기가 구비돼 있었으나, 관리 상태는 시설마다 편차가 있었다.

우선 공공생리대 이용 가능 시설 입구에서 관련 안내문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없었다. 화장실 내부로 들어가야만 지급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생리대가 부족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안내문이 적힌 곳은 4곳뿐이었다. 이도2동주민센터 공공생리대 지급기에는 '부족시 13번 창구로'라는 메모지와 함께 '싹쓸이 우려'를 담은 경고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제주시청 지급기 3대는 여성가족과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문이 있었다. 이밖에 다른 주민센터 등에는 아무런 안내문 없이 지급기만 덩그러니 설치돼 있었다.

구비된 생리대 개수는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10개 이상으로 다양했다. 모두 수동 지급기로, 중형 생리대 2개가 포함돼 있다.

직장인 20대 김모씨는 "주기가 불규칙해서 급하게 생리대가 필요할 때가 많은데 인근 주민센터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편리하다"며 "무료라서 한 번에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공공생리대 일일보고를 통해 매일 재고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는 8~9월 중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와 도서관, 보건소 등에 약 20대의 자동 지급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매일 재고를 확인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싹쓸이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상주하며 관리가 어려워 시민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공공생리대 이용 가능 시설은 일도2동·이도2동·삼도2동·용담1동·용담2동·건입동·봉개동·아라동·오라동·연동 주민센터, 제주시청(본관 2곳, 1별관 1곳), 노형·애월 청소년문화의집 등 총 15곳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올해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정책정보-모두의 생리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유리기자

16일 한 아파트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담수사팀 구성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양유리기자

# "전담 수사팀 구성, 실체적 진실 규명하라"

## '투자사기 의혹' 아파트 피해자들 16일 기자회견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겪고 투자사기 의혹까지 불거진 한 브랜드 아파트 피해자들이 경찰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A아파트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제주경찰청 앞에서 '전담수사팀 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건의서를 제출했다.

대책위원회는 "A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사건들은 다른 범죄 유형이지만 동일한 개발사업과 관련돼 있다"며 "자금의 흐름과 계약 관계가 서로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 발생 시기와 구조에 공통점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경찰청이 사건 간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담 수사 체계를 마련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달라"며 "특정인을 미리 범인으로 단정해 수사 방향을 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에서 발생한 관련 사건들의 연관성을 객관적 증거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아파트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일대에 지하 2층·지상 8층 17개동 425세대 규모로 들어섰다. 그러나 이 가운데 1세대만 분양되고 나머지 424세대는 미분양이 이어지면서 결국 지난해 9월 공매에 부쳐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아파트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사인 도내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B씨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20여 명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을 가로채고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2024년 분양 광고 용역업체로부터 9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시공사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행사와 대주단을 상대로 35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양유리기자

## 경주마에 불법약물 투약
## 몽골인 민간 조련사 구속

제주경마공원(렛츠런파크 제주)의 경주마들에게 금지약물을 투약한 몽골인 민간 조련사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20대 몽골인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공모한 같은 국적의 20대 조련사 B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할 예정이다. B씨는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기에 출전해 순위권에 든 경주마 5마리에게 근육강화제 성분의 금지약물인 '난드롤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양유리기자

# 금품 제공 수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제주지역 모 수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수협 조합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A씨는 2023년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초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전복과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금품을 준 부분 등은 일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소정기자